

가정상담

2023 | 11
통권 483호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전국 어디에서나
가정법률 관련 **화상상담**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세요
www.lawhome.or.kr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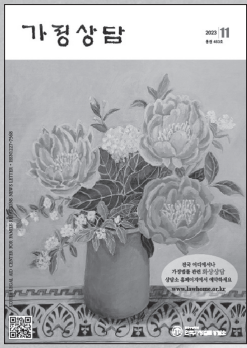
지난 10월 17일 상담소 8층 회의실에서 「검찰-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간 공익소송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검토 회의가 있었다. (관련 기사 29면)



10월 25일에는 서울서부지역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등 5개 경찰서의 피해자전담 경찰관 10명이 본소를 방문하여 상담소 설립 취지와 역사, 다양한 사업 등에 관해 설명을 듣고 상담소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련 기사 29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반 : 반드시
부 : 부정부패는
패 : 패스(Pass)해야 합니다.



4 • 이달의 메시지

6 • 최신 판례 | 등록부정정, 미성년자입양허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자출생신고틀위한확인

9 • 특별기획 |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⑪

13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⑤

15 • 가정폭력상담실

18 • 어떻게 할까요

24 • 새로 들어온 책

26 • 특선 | 엄마의 꽃시

29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33 • 소송구조

참된 의미의 행복이 구현되는 건강한 가정과 올바른 공동체로서의 사회를 생각할 때 (2)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오랜 경험을 통해 가정의 평화는 곧 사회의 평화와 인류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결론을 얻은 상담소는 그것을 실현시키는 데에도 목적을 둔다.”

상담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마음 한편에 담아두었을 상담소의 창설이념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여성’과 ‘가정’, ‘가족’을 생각하며 문을 연 상담소는 변화하는 사회와 가정의 면면을 지켜보며 함께 번민하고 문제를 직시하면서 올바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상담소는 일찍부터 가정의 문제가 곧 사회와 인류 전체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가족구성원의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체로 지금까지는 사회의 변화가 가정과 가족구성원에 끼치는 영향에 주로 주목하여 긍정적인 변화는 더 잘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은 물론 교육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의식개혁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이르러서는 가정과 사회, 가족구성원과 사회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공동체와 개인의 성장에 대해서 깊이 있는 관심이 절실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중국에서는 ‘소황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리라는 지적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인구 문제로 각 가정에 자녀 한 사람만 강제한 결과 많은 가정에서 하나뿐인 자녀를 지나치게 애지중지하여 자녀가 아무리 제멋대로 굴어도 어떠한 훈육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어린 황제처럼 키우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비슷한 사례로 일본에는 ‘상냥한 학대’라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 본인이 어릴 때 억울했던 훈육을 당한 경험으로 인해 자기 자녀들을 절대 훈육하지 않는 육아를 이렇게 부르는데 이러한 형태는 사실 여러 사회에서 보이는 일반화된 현상이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의 ‘상냥한 학대’는 훈육이나 체벌뿐 아니라 좋은 표정의 가면을 쓰고 자녀나 다른 어린 가족의 올바른 인격 형성이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커녕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방치하거나 한 걸음 나아가 나쁜 쪽으로 이끄는 행위를 뜻한다고 합니다.

근래 대학에 재직 중인 이들로부터 과거와 다른 요즘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이야기를 종종 전해 듣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수강 신청은 물론 과제, 출결, 성적에 이르기까지 학교생활의 전반에 관여하는 학부모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군에도 자녀를 잘 봐달라는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지금 자녀를,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 것인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요즘 부모들이 자녀의 사회성과 인격에는 진정 어떠한 관심도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모의 행태야말로 가족이기주의의 극단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어떠한 잘못도 용납된다는 부모의 행동이 우등생 자녀의 삶에 조금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왜 깨닫지 못할까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저지르는 학교폭력의 내용이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이니, 중학생, 고등학생의 폭력이나 범죄 내용은 차마 알고 싶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대처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이 결코 무관하지 않은데, 그것을 그저 집안일이라거나 한 사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버렸던 부끄러운 사회의 민낯이 이러한 결과로 드러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일은 그 자녀가 자신의 의지대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고 또한 사람의 제대로 된 사회구성원을 키워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훈육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사람으로서 바른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부모의 마음은 그저 공부 잘해서, 내 자녀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통해 상류사회로 진입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처참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라도 자녀를 둔 부모 모두는 사회에서 나만 홀로 설 수 없다는 것, 친구가, 이웃이 모두 나와 같은 인격과 가치를 지닌 동등한 사람이고 모두가 행복하고 사회 전반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그 안에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깨닫고 또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폭력의 현장을 보고 듣다 보면 마음속 깊이 그들 자신도 어찌지 못하는 깊은 분노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근원은 성장과정과 그 당시 가정 환경에서 연유된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격과 바른 사회성을 가르치지 않고 그저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나 다른 무엇보다 너만 최고라 가르쳐 온 알팍한 이기심이 그들이 살아갈 사회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 소중한 자녀에게 결국은 조절되지 않는 분노만을 키워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극단의 가족이기주의는 자녀 학대와 다름없고 이것이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며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회현상은 또 다른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깨닫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극단의 가족이기주의와 저출생이 혼재된 최악의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가 사회의 평화와 인류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말은 곧 가정의 평화가 사회와 인류의 평화에 우선한다는 것이고 인류와 사회의 평화가 위협받는 현실에서는 가정의 평화 또한 불가능하며, 가족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평화와 행복은 당연히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우리가 속한 사회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등록부정정, 미성년자입양허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



기본권의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를 위한 법익의 균형 살펴
성별정정 허가 여부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는 원칙을 최초로 제시하기도

민법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천명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폭 넓게 열어

1.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등록부정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

기존의 대법원 2011. 9. 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은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
환자의 성별정정은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적 지위

와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곤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허
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전원합의체 결정은 성전환자가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진정한 성으로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근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성전환자

의 기본권의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익의 균형을 위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성별 정정을 불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변경하였습니다.

2.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미성년자입양허가]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

그동안 하급심 판례들은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입양허가를 구하는 사건들에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을 허가하지 아니하여 왔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7. 4. 24.자 2017㉔단 1124 심판 등)

그러나 2021년 전원합의체 결정은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는 원칙을 최초로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조부모가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과 자녀 사이에 이미 조손관계가 존재하고 있고 입양 후에도 양부모가 여전히 자녀의 친생부 또는 친생모에 대하여 부모의 지위에 있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법원은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영속적으로 양육·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친생부모의 재혼이나 국적 취득, 그 밖의 다른 혜택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친생부모의 입양동의가 자녀 양육과 입양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자발적이고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 상담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조부모가 양육능력이나 양부모로서의 적합성과 같은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 외에도, 자녀와 조부모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입양에 이르게 된 경위, 친생부모의 생존 여부나 교류 관계 등에 비추어 조부모와 자녀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조부모의 입양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과 우려되는 사항을 비교·형량하여,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서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심리 과정에서 입양되는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도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다면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방법으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종전 대법원 판례들은 민법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하여 왔습니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므7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므347 판결,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7므1585 판결,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므2503 판결 등)

그러나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8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다른 조항의 제소권자로 명기되어 있거나 별도의 이해관계가 인정되어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 적격이 인정되며,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뜻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종전 대법원 판례들을 변경하였습니다.

4.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사건〉

부가 혼인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 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2021. 3. 16. 법률 제17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신고서에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7조 제2항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급심 법원은 구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의 악용을 막고자 부가 모의 인적사항을 전부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생부의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결정에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천명하며, 구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의 문언에 기재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예시적인 것이므로 모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모의 소재 불명이나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이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면서 위 조항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였습니다.

국회는 2021. 3. 16.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①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②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및 ③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 모두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였고, 위 법률은 2021. 4. 17.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민선 변호사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II)

알코올 중독자 가족을 위한 지침

- ▶ 술 문제를 가족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거나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받도록 합니다.
- ▶ 알코올 중독이 무엇인지 공부하여 술 문제도 질병임을 인식합시다.
- ▶ 알코올 중독자의 감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감정이 흔들리면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냉정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 ▶ 술 문제가 있는 가족으로 인해 자녀도 힘들어합니다. 자녀들의 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 자녀들이 술 문제로 갈등하는 어른들 속에서 피해받지 않도록 사랑과 애정으로 감싸주어야 합니다.
- ▶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무조건 감싸주는 것은 자녀들을 돕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 ▶ 자녀가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 ▶ 가족 스스로 변화를 통하여 당신 자신의 인생을 잘 가꾸어 나가도록 합니다.
- ▶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신 결과 발생하는 실수나 행동(예를 들면 폭력으로 검거되거나, 음주운전 사고를 났을 경우 등)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알코올 중독자 자신이 술로 인하여 일어난 일에 대하여 책임질 기회를 줍니다.
- ▶ 알코올 중독자로 인한 배우자의 고통에 대해 알려줍니다.
- ▶ 알코올 중독자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 ▶ 알코올 중독은 당뇨병처럼 평생 자기조절이 필요한 병임을 알려줍니다.

* 상담소는 일찍부터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의 문제를 제기하여 가정폭력특례법 제정을 이끌어냈으며, 법의 제정 이후에는 가정폭력상담소로써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가정폭력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3년부터 '가정폭력예방지침서' 시리즈를 발간하기 시작하였고 시리즈의 하나로 2006년부터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발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음주관련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상담소는 가정폭력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음주문제상담을 일반인들에게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한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가정상담>에도 이 자료를 게재한다.

〈알코올 중독자 가족이 도움받을 수 있는 길〉



* AI-Anon : 알라넨 모임은 알코올 중독자의 배우자, 자녀, 또는 친구의 음주 또는 알코올 중독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위해 서로 돕는 친목 모임입니다.

*** AI-Ateen : 알라틴은 알코올 중독자 자녀를 위한 자녀 모임으로써, 부모가 심한 알코올 문제를 지니고 있는 13~20세까지의 청소년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알코올 중독의 치료

알코올 중독은 마음이 약하거나 의지력이 약해서 술을 못 끊는 것이 아니고 불치의 병도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또는 알코올 중독자가 불쌍해서 차마 병원에 입원시키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단호한 결정과 냉정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대개 알코올 중독 상태가 되면 중독자 혼자 스스로 알아서 술을 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치료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1. 일단 술과 격리하고 해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술을 끊으면 심각한 금단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개 알코올의 해독은 입원치료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안전함

니다. 입원치료의 최종 목적은 술을 끊게 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여 적응하며 살아가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2. 금단증상을 줄이기 위한 약물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 약물치료는 정신과 의사의 처방을 받아 시행해야 하며, 술 끊는 약이라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약들은 부작용이 있어 위험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사용해야만 합니다.

3. 해독과 병행해서 술을 끊기 위한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여러 가지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알코올 중독자 스스로 자신과 알코올 중독에 대해 잘 알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치료는 입원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퇴원 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4. 가족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알코올 중독자의 치료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치료를 위한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족들도 중독자로부터 고통받고 길들여진 탓에 적절한 치료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교육이나 가족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가족과 중독자 모두가 도움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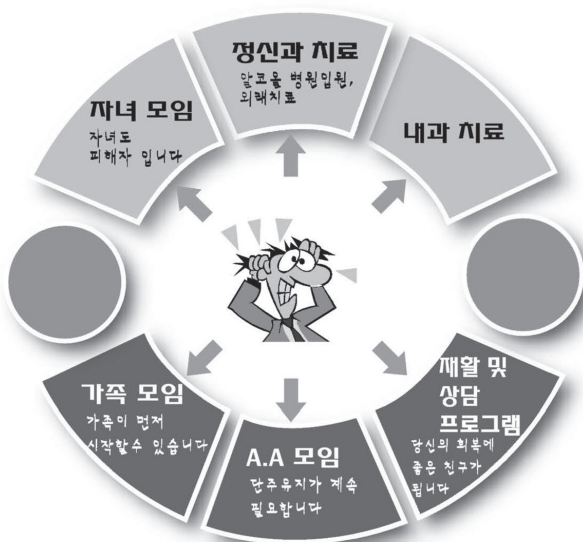
5.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재활치료는 술에 대한 갈등을 다루며 치료받고자 하는 동기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알코올 중독이 병이라는 사실과 객관적인 현실을 인식시키고,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술을 완전히 끊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코올 중독자와 가족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단주를 위한 준비

- 집안에 있는 술을 모두 치운다.
- 가급적 술을 마시는 회식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 이전에 다니던 술집이 있는 길로는 다니지 않는다.
- 일을 마치고 휴식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 가족과 주변의 친구들에게 술을 끊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한다.
-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다.
- 자신이 주도할 수 있는 모임은 술을 마시지 않는 모임으로 유도한다.

〈알코올중독 치료방법〉



재발방지 전략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까지 몇십여 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듯이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성급한 기대는 절대 금물입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전문상담기관에서 실시하는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에 참가해야 하고, 환자는 물론 가족이 함께 자조모임에 참가하여 가족 전체가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합니다.

●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첫째, 알코올 중독자 자신이 음주문제가 심각하다는 확실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 둘째, 알코올 중독이 병이라는 사실과 어떤 병인지, 그리고 이 병에서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완전하게 단주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 셋째, 술을 마시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환자 자신만의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음주가 주된 취미였다면 음주를 대체할 다른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전에 즐기던 취미생활을 다시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은 좋은 취미일 뿐 아니라 건강까지 좋아지게 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단주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1. 하루 24시간의 계획을 실천하자.

오늘 하루 동안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2. 한 번에 10분 계획을 실천하자.

자신에게 10분 또는 5분만 단주하자고 말해봅시다. 그 순간만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면 될 것입니다.

3. 알코올 의존으로부터 회복된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자.

상담센터나 단주친목(A.A) 모임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회복된 사람들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어려움을 모두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전화를 이용하자.

정말 술을 찾고 싶을 때, 일을 시작하기 전 두렵고 외로운 느낌이 들 때, 언제든지 술잔을 드는 대신 전화기를 들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5. 술로부터 멀리 있도록 노력하자.

과음을 하는 술친구와는 당분간 멀리하고 술집에 가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6. 단주에 성공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자.

오랫동안 단주에 성공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귀담아 듣는 것이 좋습니다.

7. 단주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이다.

당신의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우선 단주를 위해서 쏟고 나머지 일은 다음으로 미루도록 합니다.

8. 단주하는 동안의 맑은 정신을 생각하자.

회복하는 며칠 동안은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9. 과거의 아픈 상처를 생각해 보자.

자신에 대해 올바르게 생각해 보는 방법 중의 하나는 과거 술에 취했을 때의 실수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픈 실수들이 당신의 회복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10. 배고픔, 분노감, 외로움, 피곤함 등은 피하자.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은 당신이 허약한 상태에서 쉽게 일어납니다. 당신이 배고프거나, 화가 나고, 외롭고, 피곤할 때는 한 잔의 술이 생각날 것이므로 이러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1.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자.

맛있는 음식이나 특별히 좋아했던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초코렛, 달콤한 차, 음료수 등과 같은 달콤한 음식은 술을 끊으려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12. 공포와 혼돈에 빠질 때 주의하자.

단주를 시작한 처음 며칠은 무서운 공포감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공포감을 잘 조절하는 것이 단주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너무도 극심하여 고통스러운 때는 상담을 하도록 합니다.

13. 어떤 일이든지 인내하자.

당신은 지금 24시간의 계획을 실천하고 있으며 어려운 순간에는 한 번에 10분간의 계획을 함께 이용함으로써 모든 것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며칠 동안 두려움에 가득찰 수도 있겠지만 인내하도록 합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14. 자기 도취감과 자만심에 빠지지 말자.

어떤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신이 며칠 동안 단주에 성공했다는 사실에 기분이 들뜨고 의기양양해집니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점검해 보고 회복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은 다른 병에 비해 재발할 가능성이 많고 도처에 그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5. 단주에 실패할 때는 솔직해지자.

초기 단계에서 단주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하여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술 문제에 대해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거짓말을 한다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가정폭력예방지침서 ② 음주문제예방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중에서

개인신용불량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실시

2006년 3월 ~	서울시 지원으로 시작
2011년 5월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 협약
2015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패스트트랙 업무 협약(현 서울회생법원)
2017년 4월	서울시립 영등포 보현의 집과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업무 협약
2019년 5월	서울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와 노숙인의 신용회복을 위한 업무 협약

상담소의 법률구조 사업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내용 면에서도 그 영역을 확장해 오고 있다. 2006년 3월부터 서울시의 지원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개인신용불량자들에 대한 법적구제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도 중요한 예라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개인회생, 파산, 면책 신청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며, 면접상담을 통해 법적구제가 절실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해주고 신청대행 및 인지대, 관보 게재비,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상담소는 이 사업을 통해 개인신용불량 상태에 놓여 경제적으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소외되어 사회인으로 정상적 생활을 하기 어려워 가정파탄에 직면한 신용불량자들을 위해 조속한 사회복귀와 가정회복을 도우며 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상담소의 이 사업으로 파산 면책을 받은 안 아무개 씨는 다음과 같은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저는 이번에 가정법률상담소의 배려로 파산 면책을 받은 안 **입니다. 94년부터 빚을 지고 신용불량이라는 멍에를 지고 15년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99년 외환위기 때부터 지금까지 때론 길바닥에서 때론 지하도에서 생활하다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서 음독자살을 기도했고 사람들의 신고로 성모병원에서 깨어나서는 생명의 소중함을 교육받고 그 후로 10여 곳의 노숙인 쉼터를 전전하면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죽지 못해서 살아왔습니다. (중략) 가정법률상담소에서 무료로 파산 면책을 해주신다는 말을 들은 뒤 상담소는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소망이고 희망의 등대였습니다.

이번에 가정법률상담소의 선생님께서는 중복되는 업무와 바쁜 일에도 짜증 한 번 부리지 않으시고 싫어하는 표정 한 번 없이 친절하게 자상하게 저를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접수하시고 나서는 잘 될 거니까 기다려 보라고 희망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변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이제나 저제나 좋은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면책이 되었다는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는 날아갈 듯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악몽 같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또한 도움을 주신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중략)

이제 정말 마음 놓고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소장님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와주신 분들의 기대가 헛되지 않고 폐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후략)

이 같은 개인신용불량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은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약 등으로 이어져 2011년 5월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어 더욱 내실 있는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2015년 10월에는 현재 서울회생법원(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소송구조를 지원하게 되었고, 서울회생법원은 상담소 경유 사건을 전

담재판부에 배당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후 2017년 4월에는 서울시립 영등포 보현의 집과 2019년 5월에는 서울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와 노숙인의 신용회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어 이들에 대한 법률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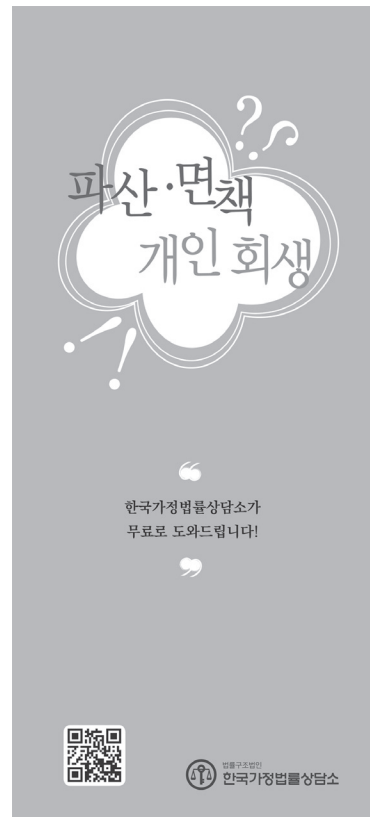
이 밖에도 상담소는 서울특별시, 서울시일자리지원센터 등과 함께 노숙인 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설에 입소하거나 도움을 받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고 장래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더 쉽게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는 신용회복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교육과 상담 그리고 파산, 면책, 개인회생 등의 법률구조는 물론 관계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관련 교육까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도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가 구현되는데 상담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편집부



▲ 지난 9월에 실시한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시설 실무자 교육현장



▲ 본소가 제작 배포하고 있는 파산·면책 개인회생 안내 브로슈어

결혼 초기, 상호폭력 겪었지만 자신을 성찰하고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 존중하는 방법 배우고 결혼생활의 올바른 토대 갖추게 돼

2020버2***폭행/ 2020버2***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2회
부부상담 7회 등 14회

상담기간

2021. 3. 10. ~ 2021. 11. 12.

상담경과

부부는 사실혼 기간을 포함하여 결혼한지 1년이 경과하였으며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없다. 부부는 2020년 9월에 제주도에서 웨딩촬영을 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소하게 되자 2020년 8월 아내가 이를 한탄하며 울고 직장 동료와 비교하자 화가 난 남편이 아내와 몸싸움을 하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차 때리는 폭행을 하였고, 아내도 이에 대항하여 남편의 고환을 잡는 등 상호 폭행을 하여 부부 쌍방이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아내는 남편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직장을 그만 둔 이후 취업이 안되자 번번이 화를 냈다고 하고, 남편은 부모가 폭력을 하는 것을 보고 자란 탓인지 폭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점을 인정하면서 변화의지를 보였다.

사건 이후 남편은 취업하였고, 아내도 직장생활을 하는 점을 배려하여 상담계획을 수립하였다. 부부는 상담을 통하여 존중 대화법을 이해하였고, 아내는 언성을 높이지 않

고 명령조로 말하지 않기를, 남편은 충동적인 감정 표현을 자제하며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이성적으로 표현하기 등을 실천과제로 정하고 노력하였다. 또한 부부는 자신과 배우자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특히 남편은 '사람이 다 다르구나~'하는 점을 이해하는 한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이 그 기준을 지키기를 바라는 자기 성격의 특성을 인정하고 자신도 다른 사람의 기준을 수용하는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부부가 상담에 임한 시점은 혼인신고 후 1달이 경과한 시점이었는데 이후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결혼식도 하였다. 아내는 남편이 좋으며 정이 들었고, 남편이 폭언 폭력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노력하였음을 인정하면서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남편은 아내가 다시 노력해보자고 하여 자신도 노력할 것이며, 정이 깊이 들었기에 아내와 잘 살겠다고 다짐하였다. 상담 종결시 부부 모두 부부관계만족도를 10점 만점에 9점으로 평가하였고, 모자라는 1점은 향후 각자의 노력으로 남겨두었다. 장차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며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당부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2021버1**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6회, 교육강좌(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 3회, 집단상담 (비대면 실시) 4회
등 13회

상담기간

2021. 5. 10. ~ 2021. 11. 5.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인 아내와 결혼한지 30년이 경과하였고, 부부 사이에 2녀 1남(31세, 30세, 23세)이 있다. 피해자의 외도가 있었고, 이로부터 10여년이 경과한 후 행위자가 외도하였는데 1년 후 그 사실을 안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고 급기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2020년). 행위자는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소송에 임하던 터에 본 사건이 발생하였다.

행위자는 2020년 9월 사건당일 (또 다른 피해자인) 아들에게 '왜 방을 구해서 나가지 않았느냐'고 시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행위자 역시 아내의 복부를 발로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혀 피해자들은 처분을 받지 않았고, 행위자는 6개월간 보호관찰 및 본소예의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았다. 본 사건 이후 행위자는 집을 나와 별거중이며 이혼소송에서 이혼의사를 밝혔고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어 소송이 진행중이다. 행위자는 아내가 가압류를 하여 재산을 행사하지 못하는 점이 어려운 점이라고 하는 등 우울감을 호소하였지만 상담에 성실히 임하였다.

행위자는 종결상담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부부에게 절반씩 있다고 하면서 이혼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 이르렀고,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 조금 누그러진 상태였다. 자녀들과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교류하고 있었고, 이혼소송이 종결되면 취미생활을 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혼인파탄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므로 억울함이나 분노의 감정을 승화시키도록 당부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2021버1**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7회

행위자 및 피해자(아내) 부부상담 2회 등 9회

상담기간

2021. 5. 11. ~ 2021. 11. 8.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결혼한지 10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1녀(7세)가 있다. 부부 모두 중국 국적이며, 행위자는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2020년 12월 사건 당일 행위자는 평소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늦게 귀가하거나 건설 현장에서 며칠씩 자고 온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나가'라고 하며 옷과 옷이 담긴 캐리어를 던지고 먹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는 등 위력을 사용, 폭행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본소예의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위탁되었다.

피해자는 한국어를 하지 못하여 행위자의 통역으로 2회 부부상담을 진행하였다. 부부의 딸은 중국에서 외조모가 양육하며, 2021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는데 부부가 양육비를 보내고 있다. 부부는 코로나팬데믹까지 겹쳐 5년동안 딸을 만나지 못하였고 영상통화로 교류하고 있는데 행위자는 딸과 서먹한 감정이 있음을 토로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일방적이어서 그동안 쌓인 부정적인 감정이 폭력으로 표출되었다고 하고, 사건 이후 피해자가 행위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귀가도 빨라져서 갈등 요인이 해소되었다고 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행위자의 노력을 인정하고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단순노무 종사자로 일기사정상 일을 하지 않는 날 개별상담에 참여하였다. 중간점검시 사건 이후 폭력이 재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더욱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위자는 사건당시 부부관계만족도를 10점 만점에 7점, 현재는 9.8점으로 평가하였는데, 피해자와 대화를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하여 딸의 양육비를 성실하게 보낸 것을 노력한 점으로 꼽았다.

종결상담시 행위자는 상담을 통한 변화로 가정폭력처벌법에 대한 이해, 피해자와의 관계개선 등을 꼽았다. 특히 피해자에게 부드러운 말투로 말하고 가사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버는 돈을 다 피해자에게 주었다고 하였다. 현재 부부관

계만족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고, 피해자도 이전보다 가사를 잘하는 등 변화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향후 피해자와 싸우지 않고, 곧 한국에 올 딸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하기 위하여 일을 더 열심히 하면서 건강하게 살기로 다짐하며 상담을 종결하였다.

2021버2폭행 /
2021버223 폭행, 재물손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8회

행위자(남편) 전화상담 1회 등 9회

상담기간

2021. 6. 1. ~ 2021. 11. 4.

상담경과

부부는 결혼한 지 16년이 경과하였으며 부부 사이에 2남(15세, 13세)이 있다. 2021년 1월 사건당일 아내가 전기장판의 전원을 껐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에 남편은 아내의 눈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고, 아내도 주먹으로 남편의 눈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이마를 할퀴는 폭행을 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에 남편이 생굴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려고 하였는데 아내가 ‘쿠킹 포일을 접시에 덮으면 불이 난다’라고 하자 남편이 화를 내며 오른손으로 아내의 턱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고, 또 아내도 이에 대항하여 두 손으로 남편을 밀치고 발로 남편의 다리를 수회 차는 폭행을 하였다. 또한 남편은 싱크대 위에 있던 그릇 선반을 손으로 엮어버려 선반 위에 있던 접시 2개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이러한 쌍방 폭행으로 아내는 6개월간 상담위탁, 남편은 6개월간 보호관찰 및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아 부부 함께 본소에 상담위탁되었다.

아내는 본 사건 이전부터 남편과 이혼하기를 원했지만 남편이 이혼만은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이혼을 보류한 상태

였다. 남편과의 갈등원인으로 음주문제, 일상화된 폭언, 폭력, 자기중심적인 점을 꼽았다. 아내는 자신이 지난 16년동안 가정폭력피해자였고, 이번 사건도 자신이 피해자로 경찰의 도움을 구하였는데 남편이 조사를 받는 중에 폭력을 당했다고 하면서 쌍방 입건되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아내는 사건 이후 별거를 제안하였고 남편이 이를 수용하여 원룸을 구하여 나가 살면서 부부는 별거하게 되었다. 별거 초기에는 1달에 2회 부부 및 자녀가 함께 식사하고 상대방 집에도 왕래하였으나 6월초 남편이 아내가 사는 집에 찾아온 후 퇴거불응하여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퇴거불응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다.

남편에게 상담이행을 촉구하였으나 간암 말기로 입원중이며 상담을 받기 어렵다고 하면서 보호처분 변경을 요청하여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한 결과, 원 처분 중 보호관찰을 6개월 연장하고 40시간 수강명령으로 보호처분이 변경되었다.

아내는 자신의 소득(영업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소통이 잘 되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담을 통하여 자녀들과의 존중대화법과 엄마 역할 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아내에 의하면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생활하다가 상담종결 즈음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한다. 접근금지 기간 종결 후 남편은 아내에게 1주일에 1~2회 전화하였고, 단주를 조건으로 취업 가능성이 있어 단주 노력을 하고 있음을 공유하였다. 별거한지 1년이 되는 시점에 남편은 집에 들어오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아내는 변화 없이는 재결합이 어렵다는 문자를 보냈고, 그에 대한 답신이 없는 상태에서 상담을 종결하게 되었다. 아내는 이혼의사가 확고하였기에 남편이 또 재결합을 요청할 경우 바라는 선행조건을 제시하고 그 해결 여부에 따라 부부관계를 재정립하도록 조언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 혼 22

● 별거부부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가

Q 문 82 | 저희 부부는 남편이 결혼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아파트에 당첨되어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납부하다가 불화로 별거하게 되었으며, 별거 직후 남편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장기간의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에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별거 이후 남편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따라서 귀하가 별거 전에 남편과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가

Q 문 83 | 최근에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집을 나가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아내를 용서할 수 없어 한 푼도 주지 않고 이혼하고 싶습니다. 결혼생활 15년에 재산이라고는 제 명의로 된 집 한 채인데 저는 직장생활을 계속했고 아내는 집에 있으면서 가끔 부업을 해 가계를 도왔을 뿐입니다. 제가 피해자니 이혼할 때 재산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A 민법은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843조, 제806조)과 재산분할청구권(동법 제839조의2)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가 재산 형성에 협력한 몫을 돌려받고 이혼 후의 부양료 성격도 있는 재산분할청구권과 이혼에 이르게 된 잘못이 있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판례 역시 “위자료 청구권이 없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고 하고,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사정은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사정만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판결)고 하였습니다. 곧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측에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으면 재산분할 액수를 정함에 있어 그 책임을 참작하는 경우는 있으나 청산할 재산이 있는 이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아내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아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아내는 결혼 후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장래 받을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Q 문 84 | 40대 후반의 주부인데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이혼을 청구하려 합니다. 재산은 소형 연립주택 한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이지만 남편은 회사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여 적립된 퇴직금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제 남편이 퇴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적립된 퇴직금에 대해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 일방이 이미 받은 퇴직금뿐만 아니라 장래 받을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판례는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은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액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Q 문 85 | 저는 은행에 근무하다가 개인 사업을 하려고 구상하던 중 은행에서 명예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과는 별도로 적지 않은

명예퇴직금을 준다고 하여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같이 협력해서 모은 재산과 연금은 물론 명예퇴직금까지 나누어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명예퇴직금은 보상금으로 받은 것인데도 나누어야 하는지요?

A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 지출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하였다면, 명예퇴직금은 그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므2628, 2635 판결). 따라서 귀하의 아내가 귀하의 근속요건에 기여하였다면 명예퇴직금도 분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

Q 문 86 | 혼인기간이 30여 년 된 50대 후반의 여성인데 남편과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지 못하였는데 남편은 오래전부터 국민연금을 납입해왔고 곧 노령연금을 타게 된다고 합니다. 이혼하더라도 배우자의 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지요?

A 이혼한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인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

한 후 60세가 되었거나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에는 그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이때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게 되며(동법 제64조 제2항), 단 당사자간에 연금분할에 대한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서 연금분할을 별도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동법 제64조의2).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청구는 수급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4조 제3항). 이러한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 주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혼 후 귀하는 남편의 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의 분할연금 수급권

Q 문 87 | 저는 이혼 조정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들과 함께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조정조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넣고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전 남편이 받을 국민연금에 대하여 미리 분할연금 신청구를 하려는데 이를 알게 된 전 남편은 제가 조정에서 연금 받을 권리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저는 전 남편의 연금을 나누어 받게 되는지요?

A 국민연금법에서는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데(국

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하고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고 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되므로 전 남편의 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배우자의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

Q 문 88 | 남편은 공무원입니다. 이혼하려고 하는데 30년 혼인기간 중 모은 재산은 지방의 조그만 아파트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퇴직 후 상당한 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혼 후 제가 남편의 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지요?

A 이혼한 배우자의 공무원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합니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5세가 되었거나, 65세가 된 이후에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에는 그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분할연금액은 전배우자의 퇴직연금액(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당사자 간에 연금 분할에 대한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서 연금분할을 별도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동법 제46조). 이러한 분할연금 청구는 수급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5조 제3항).

● 이혼한 배우자의 군인연금(퇴역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는가

Q 문 89 | 제남편은 직업군인입니다. 남편과의 심한 성격차이로 결혼생활 20년 만에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남편이 직업군인으로 박봉인 살림에 그동안 제가 벌어서 많은 부분 생활을 해왔고 모은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장래에 받을 퇴역연금이 상당한데, 남편은 현재 있는 재산만을 반으로 나누고 퇴역연금은 나눌 수 없다고 합니다. 남편의 퇴역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없나요?

A 군인연금법 제22조에서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혼한 배우자의 퇴역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2020. 6. 11. 시행). 이때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게 되며(군인연금법 제22조 제2항), 가정법원에서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동법 제23조). 배우자의 퇴역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는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2조 제3항).

● 자녀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가

Q 문 90 | 남편과 협의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생 자녀 두 명과 재산으로 3억 원 정도의 집과 예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재산을 가족 수로 나눠서 저에게는 1/4만 준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A 민법상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같이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자녀들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19세가 넘은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양육비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앞에 서술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Q 문 91 | 결혼 후 남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어쩌다 취직을 해도 몇 달 못 가는 일을 되풀이했습니다. 결혼생활 10년간 남편은 생활비 한번 제대로 가져온 적이 없어 더러 친정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 제가 세일즈 등을 하며 가계를 꾸려 왔습니다. 남편이 최근 도박에까지 손을 대면서 빚까지 대신 갚아야 할 처지가 되어 이혼하고자 합니다. 살기에 급급해 모은 재산이라고는 없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남편이 몇 년 전 상속받은 것입니다. 이 집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나요?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취득하기는 했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생활과 관련 없이 다른 외적 요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그러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따라서 귀하처럼 남편의 특유재산만이 유일한 재산이고, 아내가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가계를 거의 혼자 힘으로 꾸려온 것은 남편의 특유재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협의를 하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각서의 효력은

Q 문 92 | 제남편은 결혼생활 20년 내내 여자문제가 있었고 세월이 흘러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부정행위 때문에 제가 이혼을 요구할 때마다 남편은 매번 각서를 씁니다. 2년 전에도 한번 더 여자관계가 있을 때에는 협의이혼을 하고 전 재산을 제게 준다는 각서를 써 주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안 되면 재판이혼이라도 할 예정인데 남편이 써 준 각서가 있으니 재산은 모두 제 것이 될까요?

㉠ 남편이 아내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각서 작성 이후에도 혼인생활을 계속한 것은 이혼을 전

제로 한 것이라기보다 부부간의 불화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에 대하여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 325 판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 행해지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가리키는데,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부부가 협의이혼 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따라서 귀하가 가진 각서로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 시 청구하지 못했다면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



Q 저희 형제는 4남매인데 막내인 제가 결혼을 안하고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차례 큰 수술을 받는 동안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의 병원비나 생활비 등에 전혀 관심이 없어 제가 대출을 받아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부담해 왔고 그로 인해 저는 막중한 채무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저보다 모두 여유가 있어서 제가 어려움을 호소했더니 우선 내고 있으면 언젠가는 주지 않겠냐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제가 혼자서 부담했던 어머니에 대한 부양료를 분담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대법원은 자녀 중 1인이 모(母)에 대한 부양으로 모(母)의 병원비 등을 지출한 다음 다른 자녀(형제)들을 상대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구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민법 제 974조, 제975조에 따라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25.자 2018스542 결정 부양료).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

이나 분담액을 정할 때는 과거의 부양에 관하여 여러 부양의무자가 기여한 정도, 부양을 받을 사람의 연령,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이나 자력 등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6. 2. 자 93스11 결정 참조). 다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상환해야 할 과거 부양료의 액수는 그가 부양을 받을 사람에게 부담해야 할 부양의무 중 그의 분담 부분에 한정되므로 그 부양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등 참조). 위의 대법원 2022. 8. 25.자 2018스542 결정에서는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해서는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그동안 지출한 어머니에 대한 부양료 청구를 할 경우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거의 부양료가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천다라 상담위원



새로 들어온 책과 상담소 자료집 2022.12-2023.10

책

자존감의 여섯 기둥	너새니얼 브랜든 교양인 2015
여성의 자아	주디스 조던 외 한울아카데미 2018
여성주의 상담	로라 브라운 학이시습 2020
결혼진술서	김원 파람북 2023
반사회적 가족	미셸 바렛, 메리 맥킨토시 나뭇잎 2019
가정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2
성범죄 재판의 현안과 과제들	사법발전재단 사법발전재단 2023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2
남녀평등과 법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22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내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2
202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3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방안	법무부 법무부 2023
2023년 법전	현암사 현암사 2023
2023년 소법전	현암사 현암사 2023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의 이념과 실천	하워드 제어 대장간 2017
가족집단 컨퍼런스	앨런 맥래, 하워드 제어 대장간 2017
범죄피해자 지원 길잡이	법무부 법무부 2022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X)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
한부모가족의 다차원적 빈곤과 젠더 격차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
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
가족변화 대응 부양제도 정비 방향 및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전환을 위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과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3
아동복지법상 즉각분리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3
국적에 관한 헌법적 검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3
가정보호·아동보호재판실무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23
헌법재판실무제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23
2023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 2023

한권으로 끝내는 가사소송실무
 후견법원론
 2023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
 2023 이상문학상 작품집
 불신시대

있을법한 모든 것
 너무나 많은 여름이
 문학서울 2023
 오늘도 나는 이혼을 꿈꾼다
 얼어붙은 여자

김동근, 최나리 | 법률출판사 | 2022

폴커 립 | 경성문화사 | 2022

안보윤 외 | 현대문학 | 2022

최진영 외 | 문학사상 | 2023

박경리 | 문학과지성사 | 2021

구병모 | 문학동네 | 2023

김연수 | 레제 | 2023

몽상가들 | 몽상가들 | 2023

이경자 | 걷는사람 | 2020

아니 에르노 | 레모 | 2021

상담소 자료집

2022 동계 교원직무연수자료 : 법과 생활
 고령인지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개정 방향
 만화로 보는 한국사회의 여성과 가족: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장차현실의 만화일기
 2022년도 상담통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202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2023

장차현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202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2023

총 176 권

* 출처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7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소 21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권 및 상담소 자료 28권 등 포함

* 자료분야별: 법학 120권, 사회과학 44권, 문학 9권 등 포함

최정아 사서



김용택 시인이 엮은 『엄마의 꽃시』

이 책에 실린 시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수상한 작품들 가운데서 100편을 골라 엮은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해율은 거의 1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특히 여성들의 경우 학교 교육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상담소가 법률구조 사업을 통해 함께 하고자 했던 가난하고 억울하고 불행하며 약자인 많은 여성이 이에 해당하였다.

늦게 글을 깨친 여성들의 시를 엮은 김용택 시인은 이에 관해 "글을 쓴 어머니들은 가난해서, 여자는 학교 가는 아나라 해서, 죽어라 일만 하다가 배움의 기회를 놓쳤다. 이름 석 자도 못 써보고 살다가는 줄 알았는데, 황혼녘에 글 공부를 하니 그동안 못 배운 한이 시가 되어 꽃으로 피어났다."고 했다.

책을 엮은 김용택 시인의 도움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계층, 약자로 살아온 여성들이 쓴 몇 편의 시를 소개한다.

사십 년 전 편지

조남순

사십 년 전 내 아들
군대에서 보낸 편지
언젠가는 읽고 싶어
싸움하듯 글 배웠다

뜨는 해 저무는 하루
수없이 흐르고 흘러
뒤늦게 배운 한글 공부
장롱 문을 열어본다

사십 년을 넣어둔
눈물바람 손에 들고
떨리는 가슴으로
이제야 펼쳐 본다

콧물 눈물
비 오듯 쏟아내며
사십 년 전으로 돌아간다

* 조남순님은 울산푸른학교에서 글을 배우셨다.

따뜻한 한글

임남순

어려서 몰래 공민학교에 갔다가
받아온 입학원서에
친정어머니는 여자가 무슨 공부냐고
호미를 들고 쫓아와서 그만뒀다

까막눈으로 결혼해 시부모님에 아홉 식구
시아머니 병수발 10년
시아버지 병수발 또 10년

이제야 99세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며
공부하러 다닌다.
어려서 호미 들고 말리던 어머니는
학교 늦겠다며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
얼른 공부하러 학교 가라 하신다

힘들고 지쳐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
돌아보면 외롭고 쓸쓸했던 나의 삶을
한글이 위로해주었다

한 글자 한 글자 배울 때마다
고생했다 장하다 따스하게 어루만져주었다
한글 공부로 인해 달라진 나
움츠렸던 어깨도 펴주었다

누가 이 나이에 이런 가슴 벅찬 행복을 가져다줄까!
참 따뜻한 한글이다

* 임남순님은 평택시민아카데미 상록수학교에서 글을 배우셨다.

“.....”

이맹연

낙엽 떨어지던 가을
그해 가을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배우고 익혀
처음으로
막내한테 문자를
써 보냈습니다

문자를 받아본 아들이
전화해 왔습니다
“.....”

아들은 목이 메어 말을 못하고
나도 덩달아
목이 맵니다

* 이맹연님은 충청남도 남부평생학습관에서 글을 배우셨다.

영감 보고 있소?

김금준

못 배워서 받은 설움 어찌 말로 다 할까
그중에서 우리 영감한테 받은 설움
지금도 잊지 못하네

내가 못 배운 것을 알고는
성질만 나면 날 보고 은행에 가서
돈 찾아오라고 시켰지

그러면 나는 은행에 가서 땀을 찼찼 흘리며
2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오곤 했지

글 모르는 죄로 남편에게 대들지도 못하고
울기만 하며 평생 살았네

하얀 종이에 글씨 써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글을 배워 은행 가는 것은
일도 아니라네

지금 영감이 살아 있다면
땡땡거리며 자랑을 할 텐데 ……
영감,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소?
이제는 나 무시하지 마소
이제는 글도 척척 쓰고
은행은 한숨에 갔다 온다오!

* 김금준님은 서울 관악구평생학습관 세종글방에서 글을 배우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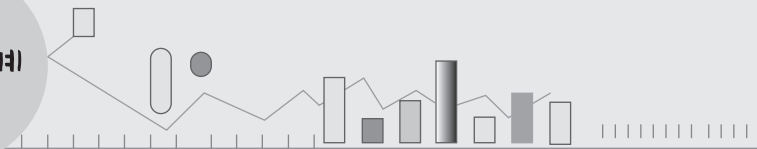
100명의 어머니가 쓰고
김용택이 엮다

엄마의
꽃시



김용택 시인이 감사와 희망을 배운 시들
우리 어머니들의 눈부신 몸짓이,
아름답고 고운 하루가, 눈물겨운 세월이,
시로 피어나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힙니다.

마음
서재



「검찰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간 공익소송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검토 회의

지난 10월 17일 상담소 8층 회의실에서 「검찰-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간 공익소송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검토 회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익소송과 관련하여 이 소송과 상담소 소송구조제도의 연계 방안 등이 깊이 있게 논의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 공판 2과 박찬영 검사와 최은성 검찰 수사관 그리고 상담소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과 복미영 상담위원, 김민선·박슬기 변호사 등이 참석하였다. (관련사진 2면)

서울서부지역 5개 경찰서 피해자전담 경찰관 본소 방문

지난 10월 25일 서울영등포경찰서 정의문 경사 및 서울양천경찰서 이동열 경감을 포함하여 서울서부지역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등 5개 경찰서의 피해자전담 경찰관 10명이 본소를 방문하여 박배희 소장과 인사를 나누었다. 이후 상담소 홍보 영화를 시청하면서 대한민국 법률구조사업의 선구자인 본소의 설립 취지와 역사, 다양한 사업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상담소에 연계할 방안을 모색하고, 관내 범죄피해사례로 접수된 사건을

본소에 상담 의뢰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및 차연실 상담위원과 논의하였다. 또한 본소에서는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가정폭력피해자와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연계할 경우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 및 권역 실무자 본소 방문

10월 27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 및 권역 실무자들이 상담소를 방문하여 8층 강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박배희 소장의 환영인사와 상담소 영화 시청에 이어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의 상담소 소개와 소송구조제도 안내 그리고 전규선 상담위원의 파산 면책 및 개인회생 소송구조 설명과 질의 응답, 소송구조 등

에 관한 구체적인 연계 협력 방안 등에 관한 의견 교환 그리고 상담소 라운딩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본소 방문 및 간담회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 양길영 주임, 양천센터 이창범 상담관, 영등포센터 이미선·채지은 상담관, 동작센터 한우석·권태영 상담관, 금천센터 이정수·김라숙 상담관 등이 참석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갈 클리닉 II」, 상담참관 수업 진행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개설과목 「리갈 클리닉 II」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참관 수업이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소와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내 본소 출장상담실에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상담을 참관하고 관련 내용을 지도받으며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을 습득하고 리갈 마인드를 함양하였으며 법률구조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담참관 수업은 11월 10일까지 계속된다.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지난 10월26일 본소 교육프로그램으로 김병후 원장(정신과전문의, 본소 이사)의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가 '마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ZOOM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생명체는 생존하기 위해 효율적인 판단과 행위를 하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 판단이 효율적이지 않으면 생을 마감해야 한다. 그 판단을 하는 것이 마음의 기원인데 오늘 강좌는 마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느낌과 감정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강사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자신이 행복한지를 예측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떤 행위를 해야 행복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의 행복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며 숨겨져 있는 자기 욕구를 찾아내고 이를 행위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감정을 통한 자기 마음과 그 의미를 아는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강의 내용이 다 좋았지만 특히 느낌을 말로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이 갔다는 소감을 밝혔다.

다음 강의는 올해에 진행되는 마지막 강좌로 11월 23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며, 순회상담의 경우도 상당 부분을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으나, 방역지침의 변화에 따

라 본소에서도 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 출장법교육 및 순회상담

10.27. 강서지역자활센터- 생활법률교육
- 김민선 변호사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전규선,

2023년 10월 상담통계

총 건수 4,351

법률상담 (3,710)

면접	전화	인터넷
986	2,639	85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531	45	65

• 인터넷 정보 이용 98,126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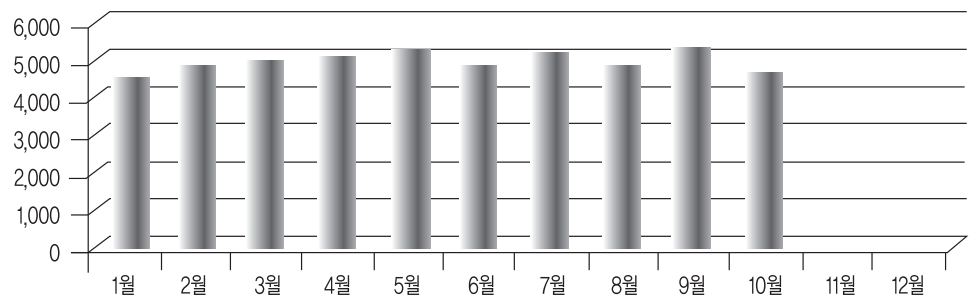
2023년 10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351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3,710건(85.3%), 화해조정 531건(12.2%), 소장 등 서류작성 45건(1.0%), 소송구조 65건(1.5%)이었다.

법률상담 3,710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3년 9월에 비해 사실혼해소(0.7%→0.8%), 친권·양육권(3.9%→4.1%), 양육비(9.4%→10.5%), 친생자존부(1.2%→

1.4%), 입양(1.1%→1.2%), 파혼(0.2%→0.3%), 개명(1.0%→1.1%), 성년후견(2.6%→2.9%), 가사절차(4.6%→6.6%), 가사기타(19.3%→21.3), 개인회생(0.3%→0.4%), 민사기타(0.6%→0.7%)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3,710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986건(26.6%), 전화상담 2,639건(71.1%), 인터넷상담 85건(2.3%)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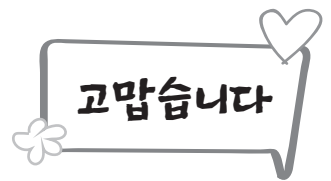
2023년
월별
총건수



천다라, 박효원, 고현희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10월 13일 법무부에서 개최된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았고, 이어서 개최된 제1차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회의에 참석하였다.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근친 혼금지조항과 미혼부 출생신고 등에 관한 후속 입법 등을 논의하게 된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갈클리닉 II」 수강생들의 상담참관 수업을 진행하고 지도하였다. 25일에는 차연실 상담위원과 함께 서울 서부지역 5개경찰서 피해자 전담경찰관들을 맞이하여 본 상담소와 사업 등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연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6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등 사건을 조정하였다.



2023년 10월 자원봉사자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님

• 야간상담을 해주신

강종협, 천정환 변호사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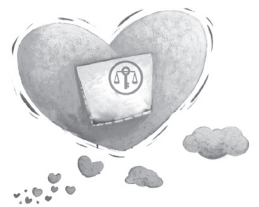
• 대학생 자원봉사

이고은, 박인아, 김지오, 이지민, 이재영, 김상은, 이현아, 전혜미, 정재은, 김영인, 한아름, 김지원, 이은세, 고원진, 전승희, 박진희, 손세민, 이주현, 서민지, 남계목, 최성은, 안예빈, 강민서, 서혜린, 조은수, 한승현, 김민주, 최신양, 김정민, 홍준화, 서유진, 이혜원, 김민선, 김예지, 최지현, 송유림, 하유지, 이유정, 김혜진, 이준호, 방승현, 최준영, 이동희, 원서영, 최문경, 손예린, 장주원, 문정현, 신영혜, 전성희, 고세현, 박민제, 최민서, 정의현, 김성은, 문시원, 노현정, 김다솔, 서현진, 나단비, 이양현 님

후원 고맙습니다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천정환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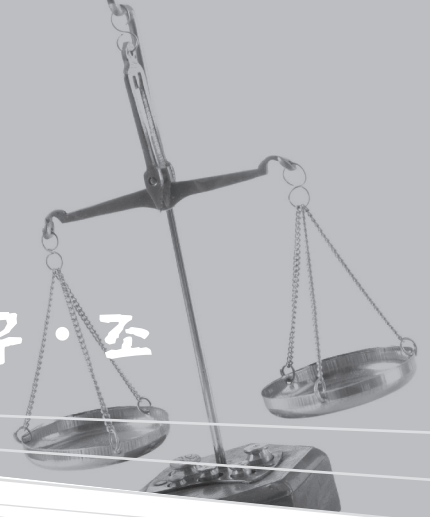
● 회원이 되시려면 ●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부로 기재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결정

법률구조 2023-1-67

담당 : 김민선 변호사

사건명 : 등록부정정(기타)

내용 : 신청인(여, 60대)은 2022. 5.경 사망한 사건본인(여)의 모친이다. 신청인은 망 사건본인을 혼외자로 출산하였는데, 출생신고 당시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되면 사람들의 편견에 시달릴까 출생신고서 부 난에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기재하였다. 즉 망 사건본인의 부는 신청인이 만들어 낸 실체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사건본인이 사망한 이후 사건본인 명의의 은행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망 사건본인의 부의 동의가 필요하여서 위법한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수원가정법원 2023. 4. 10.)

1. 본적 경기도 화성시 000번지 호주 △△△의 제적부 중 사건본인 000의 신분사항란에 부로 기재된 “△△△”을 말소하고,
2. 본적 경기도 화성시 000번지 호주 △△△의 제적부 중 사건본인 000의 신분사항란에 부로 기재된 “△△△”을 말소하고,
3. 등록기준지 경기도 화성시 000번지 사건본인 000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란에 기록된 △△△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을 전부 말소하는 것을 각 허가한다.

민법 제844조 친생자 추정조항에 의해
경합하는 부에 대한 결정

법률구조 2023-1-38

담당 : 박슬기 변호사

사건명 : 부(父)의 결정

내용 : 원고(여, 20대)는 사건본인(여)의 모친이다. 원고는 피고 1과 협의이혼 신고하였고, 바로 다음 날 피고 2와 혼인신고 하였다. 민법 제844조 제2항에 따르면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동법 제844조 제3항에 따르면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사건본인의 출생일은 민법 제844조 제2항, 제3항에 모두 해당되어 피고 1과 피고 2가 사건본인의 부로 추정이 경합되므로, ‘부(父)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사건본인의 부를 정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3. 6. 20.)

1. 피고 2를 사건본인의 부로 정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생활고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3-1-110

담당 : 박은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0대)은 어릴 적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고, 신용카드회사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서 채무는 점점 더 증가하게 되었다. 배우자를 만나 슬하에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렸으나 자녀의 장애로 치료비가 많이 지출되면서 생활형편이 더욱 안 좋아졌다. 게다가 트럭을 가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던 배우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일용직 근로자가 되어 생활비를 벌었으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생활고가 가중되었다. 결국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고, 현재 시부모가 마련해 준 집에서 무상거주를 하고 있다. 신청인은 중증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느라 다액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해결방안을 고민하던 끝에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3. 7. 27.)

채무자를 면책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3-1-148

담당 : 신은숙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40대)은 혼인 후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가정불화로 이혼하였다. 이후 사귀던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 1명을 출산하였는데, 그 남성은 자녀를 책임지지 않고 잠적해 버렸다. 결국 신청인은 홀로 3명의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모은 자금과 대출금을 합해 화장품 다단계사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사업은 1년여 만에 실패하였고, 신청인은 생활비와 원리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였다. 그러던 중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직장을 잃고 아르바이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결국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신

용카드사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게 되었고, 일을 시작하려 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직장을 구할 수 없었다. 현재 무직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신청인은 3,5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게 되었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3. 8. 17.)

채무자를 면책한다.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강제추방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법률구조 2023-1-36

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0대)와 피고(남, 60대)는 2001년 11월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다.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아들 1명을 두고 몇 년간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원고의 지병이 심해져 원고가 병원 근처로 이사를 하며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었다. 2012년경 원고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가 교도소에 수감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원고는 당시 피고가 정확히 어떤 이유로 수감되는지 몰랐고, 피고 또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피고는 2012년 수감되어 2020년 출소하였다. 이 때 원고는 피고에 대한 판결문 및 범죄이력 관련서류를 받아보게 되었고, 피고가 자신을 속이고 미성년의 여아를 두 차례나 성폭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실을 알고 엄청난 충격과 피고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으나 이미 그 때 피고는 형기가 종료하여 본국으로 강제추방된 상태였다. 피고는 강제추방된 이후에도 자녀에게 계속 연락하여 수술비,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였다. 자녀는 신용대출까지 받아 피고에게 송금을 하여 주다가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3. 9. 2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입국을 거부하여 20년간 별거한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

법률구조 2023-1-106

담당 : 백록담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0대)와 피고(남, 60대)는 2004년 7월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다. 피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에 거주 중이었는데, 원고에게 혼인신고를 마치면 한국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전해주었으나, 피고는 아직 비자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원고는 이후로도 여러 차례 피고에게 전화하여 언제 한국에 입국하는지 물었지만 피고는 여전히 기다려 달라고만 하더니 끝내 연락이 두절되었다. 원고는 최근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였는데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에서 장기간 연락도 되지 않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며 혼인을 계속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혼을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3. 9. 1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미지급된 과거양육비 전액의
지급을 인용한 결정**

법률구조 2023-1-145

담당 : 이윤선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50대)과 상대방(남, 50대)은 법률혼 부부였던 사이로 슬하에 사건본인(남, 20대)을 두었으나, 2000년 1월 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이 지정되었고,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25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 직후 연락이 두절되어 사건본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일용직등을 전전하면서 사건본인을 양육하였고, 사건본인의 대학교육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현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국가의 보조를 통하여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이미 성년에 이르렀으나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친부로서 지난 과거에 지급하여야 했던 양육비를 지금이라도 지급하여 사건본인의 장래에 대한 책임을 다해 주길 바라며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수원가정법원 2023. 8. 2.)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47,000,000원에 이를 때까지 매월 500,000원을 사건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2. 과거양육비 수령계좌가 변경될 시 청구인 또는 사건본인은 상대방에게 변경된 계좌를 통지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혼 후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과거 양육비 지급 조정**

법률구조 2023-1-435

담당 : 조계창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50대)과 상대방(남, 60대)은 법률혼 부부였던 사이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20대)을 두었으나, 2001년 1월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청구인은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였다. 사건본인이 6세 되었을 무렵부터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였는데 상대방은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사건본인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 청구인이 허리 디스크 시술을 받아 일을 하지 못해 사건본인을 위한 교복비 및 학원비를 상대방에게 부탁하였으나 상대방은 매정하

게 거절하였다. 몇 년 전 사건본인이 우울증으로 입원하여 상대방의 입원 동의가 필요했을 때, 상대방은 동의서에 서명만 해주었을 뿐, 사건본인의 상태를 묻지도 않는 등 사건본인을 걱정하지도 않았고, 병원비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 현재 사건본인은 퇴원한 상태지만 상세불명의 여러 정신과 질환으로 지금도 약을 복용 중이고 언제 다시 상태가 악화될지 몰라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느라 신체적으로 쇠약해져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수급비를 받으며 고시원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그에 반해 상대방은 공무원으로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노후를 대비하여 토지를 사놓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사건본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 청구인은 상대방이 지금이라도 과거에 미지급한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수원가정법원 2023. 9. 13.)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23. 11. 30.까지 과거 양육비로 3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상대방이 이를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

법률구조 2023-1-181

담당 : 김민선 변호사

사건명 :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내용 : 채권자들(여, 50대, 20대)은 2017. 4.경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이다. 채무자들은 유체동산을 정당한 권리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을 상대로 유체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본안 소송 중이다. 이로 인해 미리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현상 변경으로 채권자가 인도청구권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점유 현상 보전을 위해 채무자들의 점유 이전을 금지하고자 법률구조를 진행하였다.

결과 : 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5. 25.)

1. 채무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들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채무자들은 위 물건에 관하여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유체동산에 대한 소유,점유권

- 위 사건은 본소에서 진행했던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유해인도) 관련 후속사건이다.

**동거의무를 저버리고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생활을 해 온 남편과의 이혼 조정**

법률구조 2023-1-648

담당 : 박슬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50대)는 피고(남, 50대)와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두 명의 미성년 자녀들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생활 초기부터 원고에게 피고 모친의 봉양을 요구하며 원고와 어린 자녀들에게 소홀하였다. 또한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 원고가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결국 피고는 피고의 모친과 함께 생활하면서 원고와의 동거의무를 저버렸고, 수년이 흘렀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무책임한 태도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3. 8. 1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23. 12. 29.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을 어기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미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가.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합계 65,599,985원을 지급하되, 이를 55회로 분할하여 2023. 9.부터 2028. 3.까지 월 1,192,727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2023. 9.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4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5. 피고는 원고와 협의 하에 사건본인들을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6.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 등 일체의 공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즉, 각자 명의의 연금은 각자가 수령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7.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는 향후 서로에게 이 이혼과 관련하여 이 조정 성립일 이전 발생한 일에 대해 위자료 등 일체의 민, 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이 사건 조정조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원고와 피고 명의의 적극 및 소극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보유하거나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한다.

8. 소송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사망한 자녀의 상속채무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3-1-41

담당 : 정상수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80대)은 1983년경 이혼 시 자녀의 양육은 전배우자가 도맡고, 신청인은 자녀와 영원히 면접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약속을 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40여 년간 아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2015년 9월경 경찰을 통해 자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런데 2022년 11월경 서울지방법원에서 판결문을 송달받아 본 후 사망한 자녀 앞으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청인은 기초노령연금과 독립유공자 자손 생활지원금을 합한 월 65만원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었기에 3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채무였지만 변제하기에 매우 벅찼다. 채무상환을 위해 80대의 나이에 일용근로라도 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해봤지만 구할 수 없었다. 이처럼 고령과 건강상 문제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4.)

채무자를 면책한다.

**건강악화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3-1-215

담당 : 이수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0대)은 2000년경 식당을 운영하던 중 지인이 자신의 카드대금을 돌려막겠다고 신청인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 간 후 카드를 돌려주지 않았다. 더군다나 카드를 빌려 간 지인의 배우자는 술을 먹고 찾아와 식당을 부수고 신청인에게 폭력까지 행사하였다. 이후 식당의 매상이 줄고 월세와 공과금이 연체되면서 폐업하였다. 그렇게 채무가 발생한 신청인은 채무상환을 위해 다단계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사기를 당하여 채무가 증대되었다. 이후 허리와 고관절이 좋지 않아 수술을 받았고, 근로를 할 수 있는 몸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지병이 있는 친모를 모시며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친모의 지병이 악화되어 병원비 등이

가중되었고 신청인은 채무가 또다시 증대되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되어 약 60만 원의 수급비로 생활하던 신청인으로서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었다. 결국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독촉에서 벗어나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게 되었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3. 10. 19.)
채무자를 면책한다.

투자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3-1-117

담당 : 김상균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40대)은 지인의 권유로 주유소 운영에 투자하였다. 본인이 저축한 돈과 여러 캐피탈에서 받은 대출금을 모두 주유소 사업에 투자하였다. 그러던 중 주유소 대표가 자본금이 부족해 지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투자받기로 했으나 본인이 신용불량자로 공증을 서기 힘들니 신

청인에게 공증서류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공증서류를 작성해주었고, 1억 5천만 원에 대한 변제는 주유소 대표 외 1인이 함께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어렵사리 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했지만 대표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주유소는 폐업하게 되었고, 신청인에게 초기 투자금 5,200만 원에 대한 손해와 1억 5천만 원의 공증서류가 남게 되었다. 투자자들은 주유소 대표에게 민·형사 책임을 물으려 했으나 대표가 비슷한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현실적으로 손해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트럭에서 과일장사를 하는 등 채무변제에 부단히 노력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꾸준히 일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회사에 취업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했지만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 없었다. 이처럼 투자실패로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떠안고 있는 신청인은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3. 9. 21.)
채무자를 면책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설이념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만인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불행한 자, 약자 등 빈민하는 이웃의 편에 서서
이들의 인권옹호에 필요한 모든 법률적 구조사업을 무료로 제공하고
가정의 민주화와 양성평등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회복함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랜 경험을 통해

가정의 평화는 곧 사회의 평화와 인류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결론을 얻은 상담소는 그것을 실현시키는 데에도 목적을 둔다.

2023년 11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11월 13일, 11월 27일, 12월 휴강)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23년 2월~11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12월은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사전예약 접수만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강의방법 : zoom을 통한 비대면 강의 / 대면강의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정	강 의 제 목
11월 23일	부부대화법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4년 8월 중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휴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등지고실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 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5시
- ▶ 대 상 : 서울가정법원 등 보호처분 대상자
- ▶ 진 행 :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 정	강 의 제 목	강사
11월 8일	모든 걸 끝장내겠다는 충동, 불안조절장애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2월 13일	갈망에서 시작된 절망, 중독장애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가정폭력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 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에 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 하는 체험교육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 교원직무연수

가족법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 연수과정명 : 법과 생활
-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 과정
- ▶ 연수기간 : 2024년 1월 16일(화)~18일(목), 1일 5시간, 3일간
- ▶ 이수시간 : 15시간(1학점, 성적산출 안함)
- ▶ 연수대상 : 서울·전국 초·중·고 교원 20명(선착순 모집)
- ▶ 연수운영 방법 구분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
- ▶ 연수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무료
- ▶ 교과과정
 - 가족법 :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혼인 관련 법률/이혼관련 법률/부모·자녀 관련 법률/후견 관련 법률/상속·유언·유류분 관련 법률
 -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 아동복지법 관련 법률
 - 가정폭력 관련 법률
 -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 주택 임대차 관련 생활법률
 -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관련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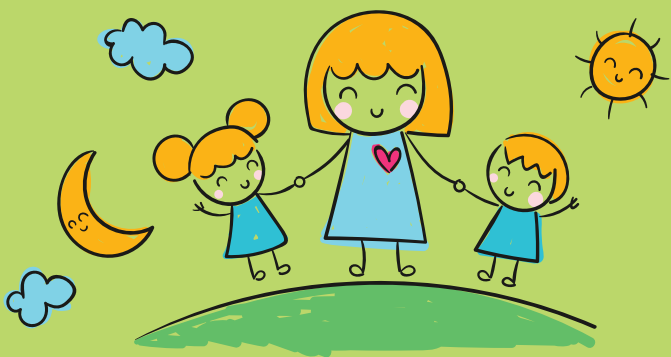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E-mail: edu@lawhome.or.kr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일시 ▶
2024년 8월 중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상상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화상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
전화상담 및 문의 **1644-7077**

다문화가정을 위한 야간 영어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사전 예약 필수)
사전예약 및 문의 **1644-7077**

www.lawhome.or.kr